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 ☐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6)에 해당합니다. 우리 순창군의 2020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협력사업비의 2020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997	332	332	332
제1금고	NH농협은행	'18.01.01~ '20.12.31.	900	300 (당초)	300	300 (20.5월)
제2금고	전북은행	'18.01.01~ '20.12.31.	97	32 (당초)	32	32 (20.5월)

-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 협력사업비의 2020년도 세출예산 편성 ·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농축산과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사업	농림해양 수산	농업 농촌	민간자본 사업보조	112	47	65	
농축산과	비닐하우스 자동환풍기 지원사업	농림해양 수산	농업 농촌	민간자본 사업보조	150	119	31	
농축산과	딸기양액육묘 재배시설 지원사업	농림해양 수산	농업 농촌	민간자본 사업보조	70	64	6	

※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 작성

※ 사업명 및 예산편성액란은 예산서상의 사업명과 분야·부문·통계목·금액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그 대상을 할 수 있도록 사업 내용을 간략히 기재